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6나637 송전탑철거등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(선정당사자)

AAA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한국전력공사

사장 ZZZ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▲▲

담당변호사 YYY, KKK, SSS

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5가단71075 판결

변 론 종 결 2007. 7. 12.

판 결 선 고 2007. 8. 23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양산시 ●●면 ■■리 산 00 임야
7,934㎡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345킬로볼트 해북 송전선로 00호 송전탑을 철거

하고, 각 135,000원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, 선정자들에게 양산시 ●●면 ■■리 산 00 임야 7,934㎡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345킬로볼트 해북 송전선로 00호 송전탑을 철거하고, 4,839,600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원고 :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4,839,600원을 지급하라.

피고 :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(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양산시 ●●면 ■■리 산 00 임야 7,93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BBB가 1938. 1. 00.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BB가 1957. 4. 00. 사망하자 장남인 CCC에게

상속된 후 1981. 5. 00. DDD, EEE, FFF, GGG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HHH, 선정자 AAA가 1992. 5. 0. 선정자 III, JJJ가 1992. 5. 0. 각 1/4 지분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1978. 6. 0.경 이 사건 토지상에 345킬로볼트 해북 송전선로 00호 송전탑(이하 '이 사건 송전탑'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·관리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갑5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철거청구 부분

(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(이하 '원고 등'이라 한다)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(2)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가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1978. 10. 00.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 등에게도 승계되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

살피건대, 다툼 없는 사실, 을1, 을2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1978. 10. 00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CCC과 사이에 임대료는 40,000 원,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송전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CC은 이 사건 토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고 만약 CCC이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

가 발생할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, 피고가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들인 원고 등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거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들어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나) 피고는 다음으로, 이 사건 송전탑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데 원고 등은 송전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,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이 사건 토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미미한 점, 원고 등은 묘를 쓰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전탑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,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 데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송전탑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공장이나 가옥 등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반면, 이 사건 송전탑의 철거로 원고 등이 받는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전탑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.

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

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(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65246 판결 참조),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,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만을 내세워 이 사건 송전탑의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본 적이 없고(다만 송전선로를 높이는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), 오히려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데 드는 고액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해 주겠다고 한 점(갑2, 3 참조), ③ 이 사건 토지 7,934㎡ 중 이 사건 송전탑의 부지는 144㎡, 송전선의 선하지는 4,081㎡로서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결코 미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(을3호증의 1, 2),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약도 받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⑤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수용이나 사용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전탑 철거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

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.

나.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

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을 소유함으로써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대로 2005. 7. 00.부터 역산하여 10년 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,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, 피고가 위 나머지 토지 부분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건대,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,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★★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1995. 8. 0.부터 2005. 7. 00.까지 이 사건 송전탑 부지의 차임 합계액은 80,000원, 송전선 선하지의 차임 합계액은 46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/4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가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 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 합계 540,000원(80,000원 + 460,000원)을 원고 등의 각 지분 비율로 나눈 금액이 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고,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 선하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각 135,000원(540,000원 ×

1/4)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| | | | |
|-----|----|-----|-------|
| 재판장 | 판사 | 문형배 | _____ |
| | 판사 | 임상민 | _____ |
| | 판사 | 신혜성 | _____ |